



2020년 하반기 장기요양 정보공유협의회

h·well
국민건강보험



목 차

1. 장기요양서비스 지원업무 운영 안내
2.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사업장 적용, 탈퇴안내
3. 장기요양 웹진「행복한 동행」발행
4.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이수 안내
5.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6.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개정사항
7. 적정 청구 지원 시스템(FDS) 제도 안내
8. 부당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사항
9.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적용기준(조리원 등)

☆ 참고자료 : 노인학대 신고대응 매뉴얼



1. 장기요양서비스 지원업무 운영 안내

■ 목적

- 공급자 · 공단 간 신뢰형성 및 소통강화를 통한 제도발전 도모
- 장기요양기관·종사자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요양서비스 질 제고



■ 주요내용

- **신규 개설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설명회**
 - (목적) 신규개설기관의 안정적 운영지원 및 대표자 역량강화
 - (내용) 장기요양제도 이해, 노무관리 및 리더십 등 기관운영 전반 안내
- 장기요양 **종사자 건강증진 지원 사업** 실시
 - (목적) 종사자의 건강관리 의식 고취 및 응급상황 대처 능력 습득
 - (내용) 안전·보건 및 스트레스, 감염성 질환, 성폭력 등 예방, CS 교육 등
- **지역본부 특화사업(힐링 프로그램 등) 추진**
 - (목적)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 지원 사업 확대로 공단·기관간 상생발전 도모
 - (내용) 지역사회 협업, 사회적 가치 실현 도모, 심신 힐링 프로그램 개발·추진



1. 장기요양서비스 지원업무 운영 안내

● 급여제공 전산서식 관리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연중)

- (목적) 장기요양기관 종이 없는(paperless) 사무환경 조성
- (매뉴얼 게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전문자료실
 >> 게시번호 60018번 「급여제공서식 매뉴얼(클라우드 서식), ver. 2020.」
- (개선) 서식 중 간호일지 '간호기록' 항목 추가 및 입력조건(필수→선택) 변경 등



● 홈페이지에 기관·종사자간 「구인·구직시스템」 운영(연중)

- (운영) 기관·종사자 : 홈페이지 '[종사자마당](#)'을 통해 구인·구직 등록
 공단 :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구직자 전건 취업상담 지원
 ※ '16~'19년 : 구직등록(526건), 취업(205건) ... '19년 48명 취업
 ※ (구직 절차) 구직신청 등록 → 기관회원에게 공개(구직등록자에게 구인기관이 연락)
- (개선) 구직매뉴얼 등록 및 입력 절차 간소화 → **구직등록 활성화**
 ※ 구직등록매뉴얼 게시, '전화번호' 선택 입력(기존 필수) → 고객중심 서비스 제공





1. 장기요양서비스 지원업무 운영 안내

● 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고충상담팀 운영 (연중)**



- (목적) 종사자 고충해소 및 권익보호를 통한 근로여건 개선
- (운영) 고객센터 내 전문상담원 4명 배치 ... ☎ **033-811-2282(전용전화)**
- (방법) 직접 전화상담 외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인권위원회 등 주무기관 연결
- (내용) **임금체불, 제도, 부당업무, 성폭력** 등 각종 고충(애로사항) 상담

※ 고충상담 전화 : 직통(033-811-2282) 통화 실패 시 이후 상담사가 직접 연락

● 장기요양요원 **성폭력(성희롱) 고충**에 대한 **유관기관 안내**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종사자의 고충에 **대응하지 않는 기관장의 조치** 요구
- (근로복지공단 재할보상부) 업무상 후유증으로 **병원진료, 산재보상** 가능 여부 문의
-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급자 처벌을 원하고, **폭력과 성추행관련 소송**을 문의할 경우
- (해바라기센터) 고충상담 및 심신치료, 법적 대응 등 **복합 민원**을 제기할 경우

※ 고용노동부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1899-3075**



1. 장기요양서비스 지원업무 운영 안내

●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 '19'6.12.시행)

-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 장기요양요원이 이러한 사항으로 고충해소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과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요원에게 **급여외행위 제공**을 요구하거나 **본인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 ● 급여외 행위 위반사례 : 기관장, 수급자(보호자) 등이 종사자를 가사도우미로 취급 하거나 수급자 보다 가족의 일을 강요하는 경우 등
- (**제재**) 지정취소, 6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 제37조 제1항 3의4
 - (**벌칙**) 지방자치단체 장이 과태료(100~300만원)를 부과할 수 있음... 제69조, 시행령 제29조



1. 장기요양서비스 지원업무 운영 안내

● 장기요양요원 급여제공과정에서 **고객 불만족 사례 공유**

- (내용) 수급자 및 가족에 대하여 민원 발생 최소화 → 장기요양기관 자체 CS교육 실시

< VOC : 요양보호사 집중예절교육 요청 > ... **공단 VOC 접수(2019.10.31.)**

(장기요양요원) 계속되는 반말, 짧은 말, 부적절 호칭 → 수급자(가족)에 대한 **막말, 폭언(폭력)**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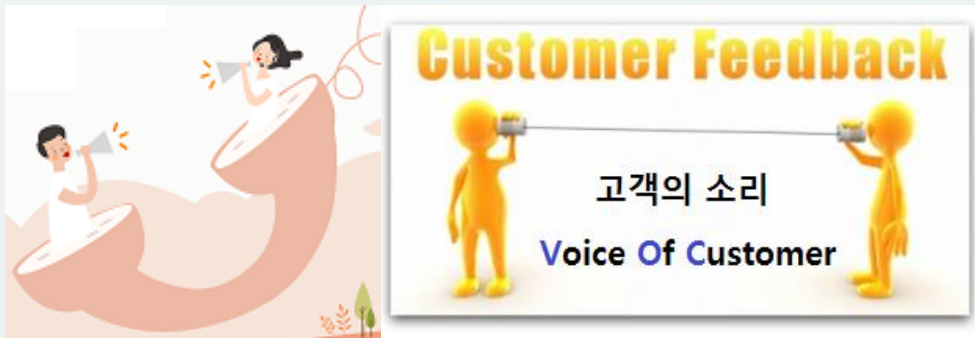
※ Case 1 : 가족들이 수급자 어르신에게 존칭(경어)함에도 요양보호사는 반말 사용하는 사례

ex) ~~ 했어?, 졸려? 눈떠!, 다 먹었어?, 아파요?, 합시다!, 하십시오! 등 짧은 말투

→ 하셨어요? 졸리신가요? 눈 뜨세요!, 다 잡수셨어요?, 편찮으세요?, 이것 하시지요, 어르신!

※ Case 2 : 요양보호사가 보호자(가족)에게 부하나 아랫사람 부르듯이 호칭하는 사례

ex) 보호자 이름을 사용하여 'OO씨'로 호칭 → '보호자님',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바른 표현





2.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 사업장 적용, 탈퇴 안내

■ 목적

- 사업장(근로자) 신고 의무자인 대표자(시설장) 대상 건강보험 실무(사업장 적용관리 및 탈퇴) 안내

■ 주요내용



- 사업장 적용대상(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법 제3조)
- 사업장 적용 제외대상
 -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
 -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
 -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1항1호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만을 고용한 개인사업장은 적용대상**
 -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1항1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자만을 고용한 개인사업장은 적용대상**



2.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 사업장 적용, 탈퇴 안내

● 건강보험 적용일

-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 고용관계 성립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일로 적용
- 사업자등록일 또는 개업연월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으나 납세사실증명서(세무서)를 제출할 경우 가능
 - ※ 1개월 이내 소급 적용의 경우, 객관적인 근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 적용 가능
- 사업자등록일이 1일 휴일이라 2일이 된 경우, 사업장이 원할 경우 1일로 적용 가능
- 개인↔법인 형태 변경(근로자 변경 없는 경우) 또는 기존 사업장 탈퇴 후 신규 사업장 적용 시 사유발생일로 소급 적용 가능
- 사업장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합병 또는 분할일자





2.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 사업장 적용, 탈퇴 안내

● 사업장 탈퇴 대상

- 휴·폐업 사업장
- 합병(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
- 부도, 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
-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 또는 직장가입자 적용대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9조제1호에 따른 비상근 근로자, 월 60시간미만 단시간 근무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 근로자 및 사용자
- 공사기간이 종료된 건설일용사업장
- 대표자 사망 사업장



3. 장기요양 웹진 「행복한 동행」 발행

주요내용

● 웹진 구성 : 4섹션 17칼럼

섹션 명	칼럼 명
건강한 정보	이달의 이슈, 건강TV, 행복 가득 우리동네, 지식 충전소
이로운 보험	노장 이야기, 공단 소식, 공단 사람들, 심사청구사례
행복한 노후	즐거운 프로그램, 어르신이 달라졌어요!, 급여제공 우수사례, 감동 있는 이야기
꽃다운 인생	명사의 노후생활, 세상 풍경, 건강한 밥상, 이벤트, 노장 퀴즈 달인

- 제도 관련 새 소식 및 어르신을 위한 지자체 운영 정책 소개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현장, 체험 사례, 급여제공우수사례 등 제공
- 건강정보, 취미생활, 제철음식 등 유용한 콘텐츠
-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 관련 예방수칙 등 정보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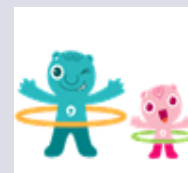
● **발행주기** : 매월 5일 경 ... 메일링서비스, 앱 PUSH 알람 제공

● 구독방법

- (모바일) 구글 플레이 스토어 → [장기요양웹진] 앱 다운받아 접속

※ 안드로이드만 이용 가능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홍보관/장기요양보험 소식지





4.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이수 안내

■ 목적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의 노인인권 보호와 개선
- 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 제고

■ 교육대상자 ... 매년 4시간 이상 교육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 교육내용

-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 요령 및 절차 등

■ 법적근거

-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6조의3, 시행령 제11조의2, 시행 규칙 제1조의3,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재가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시행령 제14조의2, 시행규칙 제27조의2, 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5.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 목적

- 장기요양기관이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가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인건비 지출비율이란?

-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고시에 명시된 비율

●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

- 급여유형별로 1년(1.1~12.31)간 제공된 급여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5.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관련 근거

<p>법</p>	<p>■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제6항 -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p> <p>■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예산의 편성 및 제출)제3항 - 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은 별표 2의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한다.</p> <p>■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의2(시정명령) - 시·군·구청장은 재무·회계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 할 수 있다.</p>
<p>고시</p>	<p>△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제1항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다음표에 명시된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p> <p>△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제3항 제1항의 인건비는 모든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 제11조의4에 따른 장기근속 장려금 및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한다.</p>



5.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인건비 지출비율

구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 비율(2019년)	인건비 지출 비율(2020년)
노인요양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0.2	60.4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4.7	64.9
주야간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8.0	48.1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8.3	58.3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6.4	86.5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1	49.2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59.0	59.3



5.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 주요 질의사항(Q&A)

●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 시 '인건비'란 무엇인가요?

☞ 인건비는 고시 제11조의2 제1항 표에서 급여유형별 모든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기타수당*), 장기근속장려금, 사회보험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을 말합니다.

* 명절수당, 가족수당,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등 종사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정기적인 비용

● 미지급 된 퇴직적립금(장기요양요원이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등)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 퇴직적립금은 수가 산정 시 모든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사자가 1년 이내 퇴사하는 등 퇴직금 미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퇴직적립금은 인건비성 경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 주요 질의사항(Q&A)

- 180분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한 요양보호사에게 180분 수가에 대한 인건비 지출비율 만큼 반드시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인건비로 지출해야하나요?

☞ 아닙니다. 인건비 지출비율은 장기요양요원 1인이 아닌 전체 장기요양요원에게 지출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인건비 지출비율 대상에 해당하는 전체 장기요양요원에게 1년간 지출한 인건비의 합이 인건비 지출비율을 충족하면 됩니다.

- 인건비 지출내역을 어떻게 제출하며 제출한 후에 수정이 가능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이 매월 급여비용 청구 시에 공단 포털화면에서 인건비에 해당하는 임금, 사회보험 기관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입력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제출한 내역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6.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사항

- 안전손잡이 품목의 연간 구입한도 4개→10개(고시 제4조) ... 2020.3.1. 시행
- 배회감지기 이용제한 삭제를 통한 급여대상 확대(고시 별표) ... 2020.3.1. 시행
- 경사로의 세부유형(실내용·실외용)으로 구분(고시 제2조, 제4조) ... 2020.3.1. 시행
 -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함
 -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 가능함



- 참고자료 ➡ 고시·세부사항 전문 및 주요 개정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 (전문) 알림·자료실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전문) 알림·자료실 / 복지용구 안내 / 공지사항



7. 걱정 청구 지원 시스템(FDS) 제도 안내

■ 걱정청구 지원 시스템(FDS) ?

- 장기요양급여, 건강보험자격, 출입국내역 등 공단이 보유한 자료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청구경향 분석과 걱정청구를 지원하는 시스템

※ FDS : Fair Detection System

■ 주요 역할

-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착오청구 유형 등의 전산분석 및 점검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걱정청구 유도 · 지원

■ 검출 유형 활용

- 현지확인심사 등 장기요양기관 **청구내용 점검**
 - 종사자(수급자) 해외출국 기간 중 청구, RFID 전송률이 낮은 기관 등
- 착오청구 유형 검출 명세서에 대한 **정밀심사 실시**
 - 방문목욕 주 1회 초과 청구, 모니터링 불일치 건 등





7. 걱정 청구 지원 시스템(FDS) 제도 안내

다빈도 검출 사례 게시

- 게시 주기 : 2020년 반기별(6, 10월) → 2021년 분기별(1, 4, 7, 10월)
- 게시 위치 : 장기요양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또는
장기요양 업무포털 > 공지사항 및 청구심사게시판 알림방

다빈도 검출 유형

- 1) 서비스 과다 청구 모델
 - RFID 태그를 시작만 전송하는 경우
- 2) 종사자(수급자) 해외출입국 모델
 - 종사자(수급자)의 출입국시간 사이에 급여제공된 경우
- 3) 교차청구 모델
 - 수급자와 가족관계인 요양보호사 여러 쌍이 서로 수급자를 교차하여 청구하는 경우
- 4) (월 변경)방문목욕 초과 모델
 - 월이 변경되는 주에 수급자 기준으로 방문목욕 횟수가 1회 초과인 경우
- 5)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 모델
 - 같은 날 주야간보호와 입소시설을 모두 이용하고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를 왕복으로 청구한 경우





8. 부당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사항

■ 추진개요

- 부정 청구 · 부정 수급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 주요내용

- 부정청구 관련 제재 조치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사항 ... '20.10.1. 시행
 - (급여의 제한) 수급자 부정수급 가담한 경우 급여 제한(법 제29조)
 - (공표 의무화) 거짓 청구기관 및 현지조사 거부기관 공표의무화(법 제37조의3)
 - (급여비 지급보류) 현지조사 거부기관 급여비용 지급 보류 근거 마련(법 제38조)
 - (보고 및 검사) 현지조사 주체 특별시·광역시·도지사 추가 및 공단 행정응원 근거마련(법 제61조)
 - (벌칙) 현지조사 거부 벌칙규정(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법 제67조)
- 부정청구 관련 제재 조치 강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사항 ... '20.5.28. 입법예고 중
 - (지정취소) 거짓·부정 청구한 장기요양기관 2차 위반 시 지정취소(시행규칙 제29조)
 - ※ (현행) 1, 2차 위반 시 업무정지(최대 6개월), 3차 지정취소
 - ⇒ (개정안) 1차 위반 시 업무정지(최대 6개월), 2차 지정취소



9. 장기요양기관 조리원 등 인력 현지조사 적용기준

■ 목적

- **조리·위생·사무원, 관리인이 공석·휴무·경조사 등으로 부재하는 경우 현지조사 적용 기준**
 - 지자체에 신고된 직종과 다른 업무를 전담한 경우 또는 일부만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인력배치기준을 현지조사에 적용

■ 주요내용(2016.1.1.부터 적용)

- **요양보호사가 다른 업무(조리원 등)를 전담한 경우**
 -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급여비용의 가·감산 기준위반으로 처리
- **요양보호사가 다른 업무(조리원 등)를 일부 수행한 경우**
 -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 아님 ...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 인정

■ 사례

조리원 관련 환수 사례

- ◆ (사례) 조리원 강00은 2019.4.11~30일까지 실제 127시간 근무하였으나 월 기준근무시간에 맞게 근무시간을 176시간으로 늘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해당함

▣ 참고: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2호(2015.11.25.), 제2015-223호(2015.12.24.), 제2016-121호(2016.7.1.)



9-1.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

■ 추진개요

-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 착오 청구 자율시정 유도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 도모

■ 주요내용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

-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
- 인력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 정원초과 기준위반 청구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동안 1일당 수가 청구
- 서비스 제공하지 않고 청구
- 서비스 시간 늘려서 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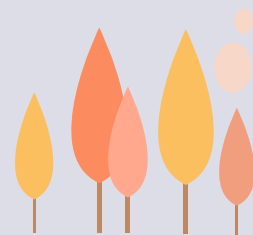
※ (경로) www.longtermcare.or.kr > 기관 포털 > 급여비용청구 > 청구·심사게시판 > 현지조사 부당청구사례

참고자료 노인학대 신고대응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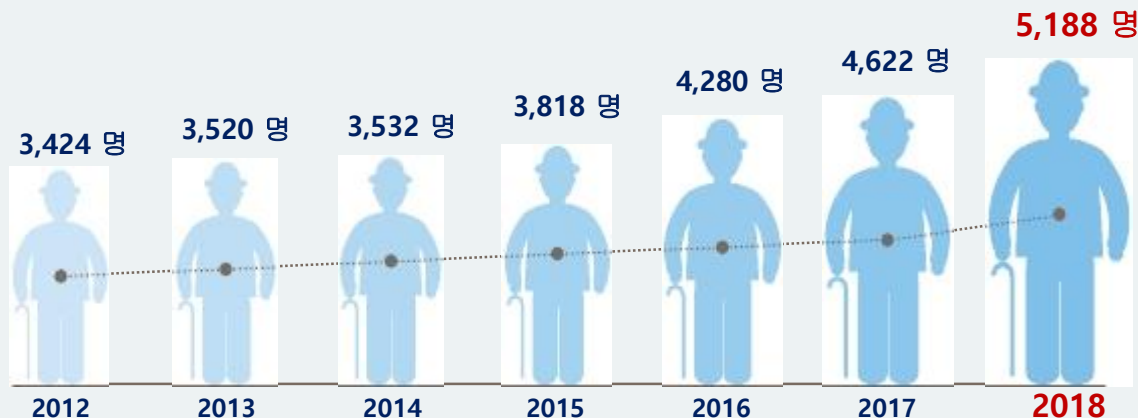
- 노인학대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노인 10명 중 1명은 지금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학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 ▶ (생활 점검) 오늘 하루, 노인학대가 의심스러웠던 적이 있었나요?
- ▶ (방관 금지) 어쩌다 한 번 일어난 일이겠지...’라는 생각에 모른 척 하지는 않았나요?
- ▶ (자기 점검) 내가 무심코 했던 행동이 노인학대에 해당하지는 않았나요?



■ 노인학대 신고건수 및 발생현황



※ 출처 : '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9)



참고자료 노인학대 신고대응 매뉴얼

■ 노인학대 발생 현황

- (1) 학대 행위자 : 남자 4,008명(70.8%), 여자 1,657명(29.2%)
- (2) 피해 노인과 관계 : 아들 2,106건(37.2%), 배우자 1,557건(27.5%), 의료인·시설종사자 등 관계자 788건(13.9%), 딸 436건(7.7%), 피해자 본인 240건(4.2%) 등 5,665명(학대 행위자 1명 이상)
- (3) 학대장소 : 가정 4,616건(89.0%), 시설 380건(7.3%), 병원 65건(1.3%) ... 재학대 장소 : 가정(98.4%)
- (4) 학대유형 : 정서적 학대(42.9%), 신체적 학대(37.3%), 방임(8.8%), 경제적 학대(4.7%)
- (5) 피해노인 가구형태 : 자녀동거 1,738명(33.5%), 노인부부 1,512명(29.1%), 노인단독 999명(19.3%)
- (6) 신고자 : 경찰관 등 관련 기관(65.6%), 친족(9.1%), 사회복지전담공무원(7.7%), 피해자 본인(7.5%), 노인복지시설 종사자(3.7%),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1.4%)
- (7) 재학대 행위자 : 아들 202명(48.9%), 배우자 153명(37.0%), 딸 25명(6.1%) 등 500명
- (8) 노인특성 : 독거노인 999명(남자 322명, 여자 677명, 전체의 19.3%), 치매노인 1,207명(남자 323명, 여자 884명, 전체의 23.4%)
- (9) 노-노학대 : 학대행위자는 배우자 1,474건(71.9%), 피해자 본인 240건(11.7%), 기관 138건(6.7%) ... 전체 학대의 36.2%, 2,051건



*노(老)-노(老)학대 의미 : ① 60세 이상 고령자의 노인학대, ②고령의 부부간 발생하는 학대, ③고령의 자녀에 의한 학대, ④고령의 노인이 본인을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학대 등을 말함

참고자료 노인학대 신고대응 매뉴얼



■ 노인학대의 특성

- ① **지속성** : 오랜 기간 동안 학대행위가 계속됨
- ② **복합성** : 가족 및 관계 내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이 존재함
- ③ **반복성** :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하여 발생함
- ④ **은폐성** : 묵인되고 은폐되며, 남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음 “그래도 내 자식”



■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참고자료 노인학대 신고대응 매뉴얼

■ 노인학대 7대 예방 수칙

- ①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합니다.
- ②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③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④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⑤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⑥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 ⑦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 노인학대의 유형

- ①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② 다툼, 욕설 등의 큰 소리가 자주 들린다.
- ③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④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⑤ 식사를 거르거나 영양실조, 탈수상태이다.
- ⑥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⑦ 노인을 시설에 입소 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참고자료 노인학대 신고대응 매뉴얼



■ 노인학대의 신고 의무

- ① (신고자)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② (신분보장)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 ③ (신분노출 금지의무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노인복지법 제57조)
- ④ (비밀보장) 학대노인 업무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노인복지법 39조의12)



■ 노인학대 신고 상담



(1) 노인보호 전문기관 **1577-1389**으로 신고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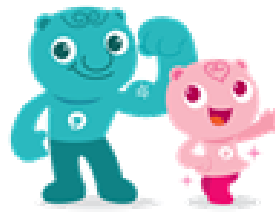
→ 신고자 기준으로 관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연결됩니다.

해당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직통 번호로 신고함이 바람직합니다.



(2) 정부민원 안내콜센터 **110**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신고할 경우

→ 학대피해 노인과 가까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경찰서 등으로 이관 됩니다.



감사합니다.

